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Support for import and export cargo customs inspection cost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CONTENTS

0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3
0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및 심사 절차	7
0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정정 및 취하 신청	27
0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Q & A	31
0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상담창구	37
0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검사비용 고시	4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01

✓ 제도개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 도입배경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개선
-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에 대한 반입 차단

✓ 관련근거

관세법 제173조③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범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검사유형 ① 관리대상화물, ② 부두직통관화물, ③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 ①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 ②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 ③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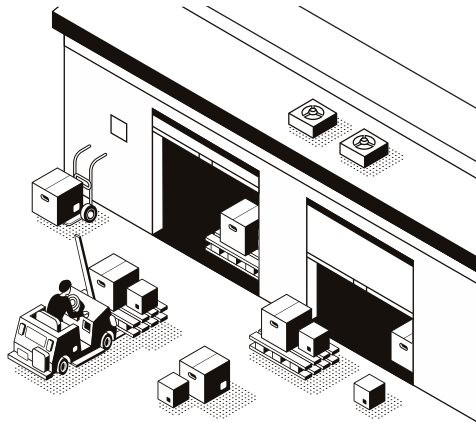
-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 2조제5조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지원제외

- ①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 ② 「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 *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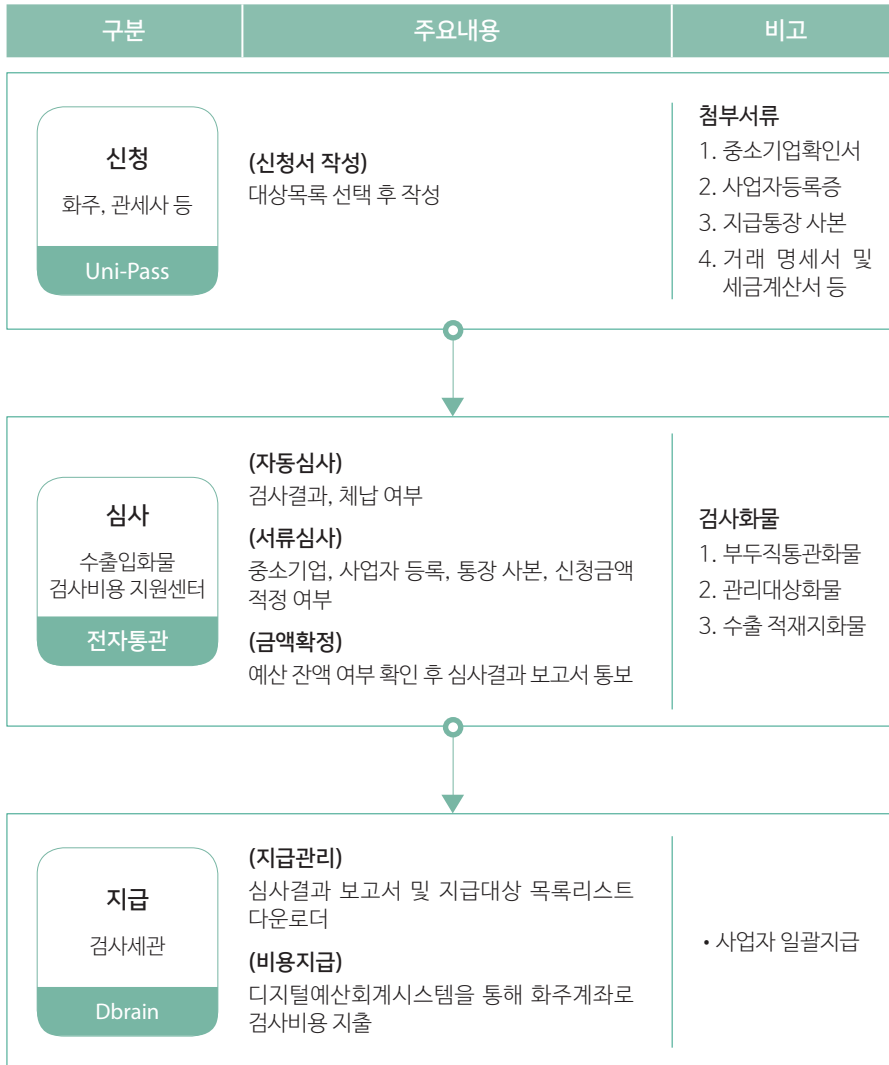
0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및 심사 절차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및 심사 절차

02

✓ 검사비용 지원 절차 개요



☑ 심사 세부 절차

구분	단계	세부내용
사전 준비	1. 통관고유부호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구분코드) 신청하기 - 유니패스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2. 유니패스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패스(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 - 웹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3. 신고인부호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야 화주가 직접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할 수 있음 [신고인 부호 체계 : 일련번호 5자리 생성]

※ 통관고유부호, 신고인부호 및 유니패스 이용신청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전준비 없이 신청가능

구분	단계	세부내용
신청서 작성하기	1. 유니패스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
	2.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 신청기간: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내역 해당 화물 정보 및 화주정보, 계좌정보, 검사비용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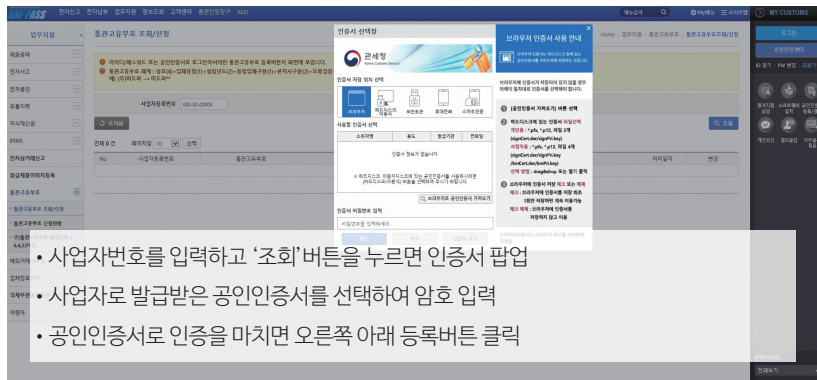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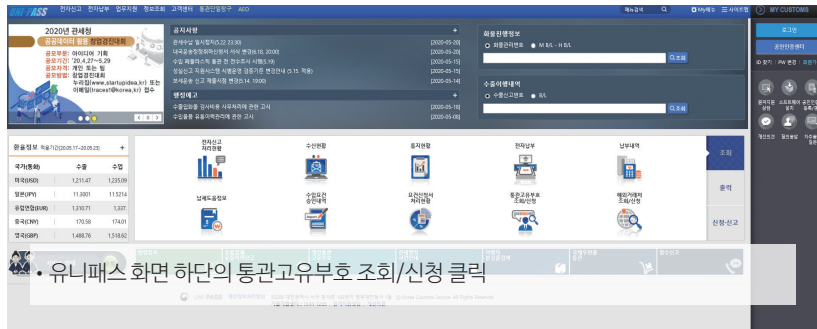
구분	단계	세부내용
신청서 작성하기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한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전송 • 신청서 및 신청대상을 사전검증하여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작성 되지 않은 경우 오류통보 • 전송 후 오류로 통보되면 해당 항목을 정정한 후 재전송 하거나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 (☎1544-1285)

구분	단계	세부내용
심사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기업규모,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수출신고번호)와 검사 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 검사결과 법령위반 사실여부 - 검사비용지급 신청금액 적정여부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서류 등을 보완하여야만 심사 가능 • 검사비용 심사 후 남아있는 예산을 확인하여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중단 등 지급여부 결정 • 지급예정: 예산 확인결과, 기한 내 지급이 가능 한 경우 • 지급보류: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중단: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지급	지원금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부서에서 심사하여 통보받은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회계부서에서 화주의 사업자 계좌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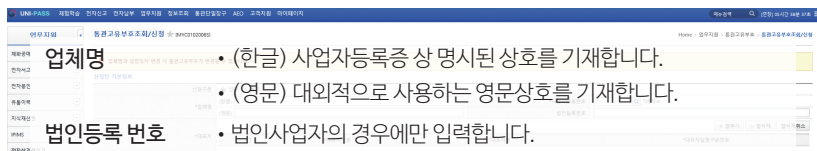
✓ 사전준비

1단계 / 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확인



통관 고유부호 신청서 작성



대표자

-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따라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대표 전화번호

- 신청업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대표 팩스번호

- 업체 팩스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일자

- 법인의 경우 본사의 설립년도를 기재하고, 개인 등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 개시년도를 기재합니다.

본·지사 구분

- 본·지사 구분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여부

-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SMS 수신여부

- SMS 수신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메일 수신여부

- 이메일 수신여부를 체크합니다.

신청인명/ 관세사부호

- 신청인명, 관세사가 신청하는 경우 관세사 부호를 기재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동의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체정보 등을 열람하는데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의 '전송'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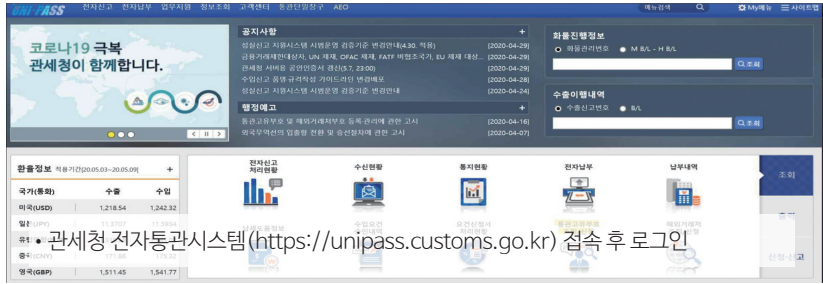
통관 고유부호 신청 결과 확인

통관고유부호 등록 화면으로 접속

- 처리일자, 조회구분,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 조회버튼을 눌러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확인
- 인증서 확인이 되면 신청서 내역이 조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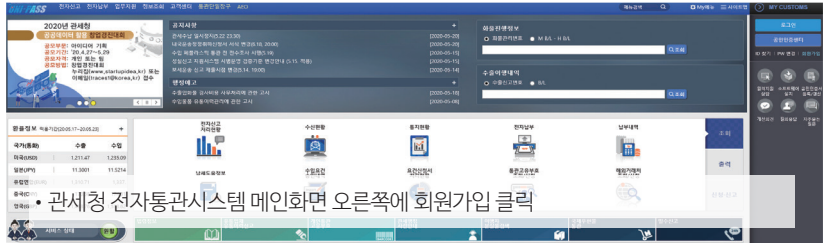
2단계 유니패스 이용신청 및 신고인부호 부여 방법

로그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로그인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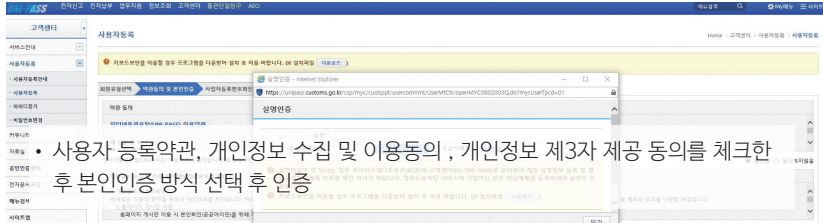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메인화면 오른쪽에 회원가입 클릭

회원유형 선택



• 업체 및 대표자 메뉴에서 사용자 등록 버튼 클릭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 사용자 등록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한 후 본인인증 방식 선택 후 인증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업체정보 입력

사용자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

-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관세청통관포털용,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돋보기 모양을 누름 ▶ 인증서 위치 선택 ▶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서를 선택 ▶ 인증서 암호를 입력 ▶ 확인 버튼을 누름

부호 및서비스 신청

업체유형 개인근로자 항상제

업체유형 부호유형 부호 사용유무 주사용

별책제 시 가동료 및 부호료는 지원비과는 무관하게 별도 징세됩니다.
 인쇄상 및일 시 재관승인 사항이외는 관공화 기재되어 합니다.
 업체유형 부호는 업체를 조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신청서 전송 불가)
 주사용 부호는 신고서 작성 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서비스 종류 (세관승인용외)			서비스 종류 (사용승인)		
신청	서비스	비고	신청	서비스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출입통관		<input type="checkbox"/>	정보조회(유용이력)	수출입신고필증, 유용이력신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체유형 및 서비스종류를 선택		<input type="checkbox"/>	출발서발급	수출입신고필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관신청(출판신청서)	사용유무확인신고서, 유관 및 일격신청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율해당부	ASO
			<input type="checkbox"/>	전자영장	

업체유형: 무역업체, 화주직접신고 선택
서비스종류: 수출입통관, 정보조회 선택

1. 서비스 종류(세관승인용외)는 세관 승인 용도 후 별도 확인으로 주가 지 특 유관할 분야에 하는 경우 분류됩니다.
2. 주 출입통관, 출발서발급 등 모든 서비스 신청은 유관 신청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관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시
4. 신고서
5. 영장
6. 영장
7. 서비스
8. 주 출입통관 및 정보조회 등 모든 유관 신청서 작성됩니다.
9. 주 출입통관 * 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 시 신고인부호가 부여됨
10. 주 출입통관 * 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 시 신고인부호가 부여됨
11. 유관신청서 * 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 시 신고인부호가 부여됨
12. 유관신청서 * 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 시 신고인부호가 부여됨
13. 유관신청서 * 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 시 신고인부호가 부여됨

SMS 신청 (정보수신 서비스)

한글/ASO 한자/ASO 업무자율 정보조회 고객센터 유관신청서 ASO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 > 사용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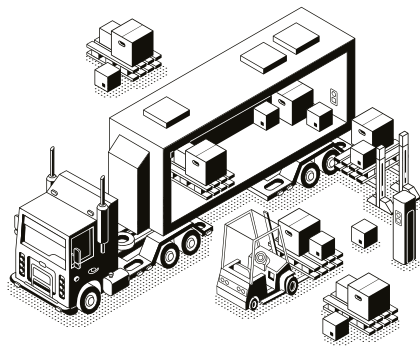
사용자등록

카보트보관할 여왕할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설치파일 다운로드)

[회원가입안내](#)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확인](#) > [업체정보](#) > [사용자정보](#) > [부호및서비스신청](#) > **SMS신청**

업무안내서비스, 정책홍보서비스, 수신채널: 선택 체크사항으로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 체크

완료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세관에 승인요청됨



✓ 검사비용지급 신청

1단계 / 신청서 작성

- 유니패스 로그인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검사비용 지원 ▶ 대상목록조회
- 검사비용 신청대상 선택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지급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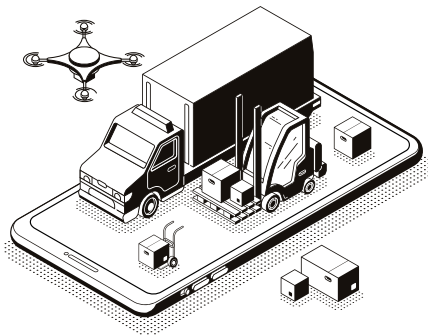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2020년 12월 25일	
③ 검사 세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평택 <input type="checkbox"/> 군산 <input type="checkbox"/> 광양 <input type="checkbox"/> 포항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관리대상화물	(화물관리번호: 20AAAA24M II 6-0007-0003) (수입신고번호: 12345-20-67890IM)	
	<input type="checkbox"/> 부두직통관화물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적재지검사화물	(수출신고번호:)	
	⑤ 신청관세사 : ⑥ 관세사부호: ⑦ 연락처 : 010-1234-5678		
* '⑤, ⑥ 관세사' 란은 화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2. 수출입 화주			
① 상 호	(주)대한상사 (신고인부호:12345)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③ 대표자	홍길동	④ 통관고유부호	대한상사4567890
⑤ 주 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⑥ 연락처	042)123-4567
3. 지급계좌			
① 예금주	(주)대한상사	② 은행명	대한은행
③ 지급계좌번호	123-45-67890	④ 실지명의번호	123-45-67890
* '④ 실지명의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검사비용			
① 운 송 비	55,000 원	② 상 · 하차료	33,000 원
③ 적출·입료	165,000 원	④ 합 계	253,000 원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	PUTY24877	② 컨테이너(개수)	20FT(✓), 40FT(), 기타()
<p>「관세법」 제1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12월 25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세 관 장 귀하</p>			

항목	작성내용	작성례
1. 신청 내역	① 신청번호는 세관기재란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일자(신청시 “년 월 일”)을 기재합니다.	• 2020년 8월 25일
	③ 검사를 실시한 세관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부산'선택
	④ 검사를 실시한 화물의 종류에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 관리대상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 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부두직통관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 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번호(14자리)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화물'선택 • 관리대상 및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관리번호: 20HXFC5470i82500726 - 수입신고번호: 1225120201772M • 적재지검사화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번호: 4284520050033X
	⑤ 신청한 관세사명을 기재합니다.	• (주)우리들 관세 (※화주신청시 생략)
	⑥ 관세사 부호 5자리를 기재합니다.	• 12345 (※화주신청시 생략)
	⑦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2. 수출입 화주	① 화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신고인 부호(5자리)를 기재합니다.	• ○○물산(주)(45678) (※관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신고인 부호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1234567890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홍○○
	④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합니다.	• 갑을병정4567890

항목	작성내용	작성례
2. 수출입 화주	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전광역시 ○○구 ○○동 125번지
	⑥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3. 지급 계좌	① 사업자 명의 통장계좌의 예금주를 기재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 법인사업자: ○○물산(주) • 개인사업자 - 홍○○(ABC네트워크) 또는 홍○○
	② 통장개설 은행을 확인 한 후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1.산업은행, 2.기업은행, 3.국민은행, 4.외환은행, 5.수협, 6.농협, 7.지역농축협, 8.우리은행, 9.SC 제일은행, 10.한국씨티은행, 11.대구은행, 12.부산 은행, 13.광주은행, 14.제주은행, 15.전북은행, 16.경남은행, 17.새마을금고, 18.신협, 19.상호저축 은행, 20.우체국, 21.KEB하나은행, 22.신한은행, 23.산림조합중앙회 계좌에 한함	• ○○은행
	③ 통장계좌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54178413333
	④ 사업자 통장개설 할 때의 실지명의 * 확인번호를 기재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개인사업 자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7234567890123
4. 검사 비용	①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운송비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40,000
	②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상·하차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0,000
	③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적출·입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50,000

항목	작성 내용	작성례
4. 검사 비용	④ 합계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검사비용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합계를 직접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는 경우 - 자동계산: 310,000원 •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직접입력: 110,000원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번호 입력: PUTY24877
	② 컨테이너 종류를 선택하고 개수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종류와 개수 입력: 40FT(2)
처리 기간	1.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지급 2.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 '20년은 예산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0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10-2020-199483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업명 : (주)대한상사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 123-45-67890
대표자명 : 홍길동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주업종 : 운송업
유효기간 : 2023년 01월 01일
용도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규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는 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인지 확인필요

0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상 호 : (주)대한상사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년 01월 01일
개업연월일 : 2020년 01월 01일
사업장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사업의종류 : 제조업 소매업 인쇄, 출판, 기획, 디자인, 편집, 복사
기념품,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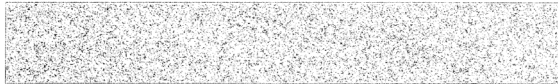
발급사유 : 정정
공동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0년 01월 01일
서대전세무서장







국세청
Korea Revenue and Customs Authority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인지 확인필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03. 통장사본

	대한은행 SWIFT CODE : CZNBKRSEXXX
홍길동 ((주)대한상사) 님 사업자우대통장-보통예금	
계좌번호 (Account No.) 예금종류	* * * * * _ * * _ * * * * * 보통예금
결산일 6,12월 제2금요일 가입하신날 2019년 12 12일 계좌관리점 청사점 통장발행회차 1회차 <small>A600-001 (14×17.5) 엠보싱지180g/m², OCR105g/m² (이 통장은 표지를 합하여 12장 입니다) K07</smal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 감 (서명) (SIGNATUR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서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font-size: small;">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원 중부세무서청 후납승인 2002년 3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 1588-0000 대한은행 FAX 042)123-4567 인감취인필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을 제출

필수 확인 사항

1. 신청 가능한 은행 (가상계좌는 지급이 불가)
 - 1. 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외환은행, 5. 수협, 6. 농협, 7. 지역농·축협, 8. 우리은행, 9. SC제일은행, 10. 한국씨티은행, 11. 대구은행, 12. 부산은행, 13. 광주은행, 14. 제주은행, 15. 전북은행, 16. 경남은행, 17. 새마을금고, 18. 신한, 19. 상호저축은행, 20. 우체국, 21. KEB하나은행, 22. 신한은행, 23. 산림조합중앙회
2. 실지명의번호 재확인 필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본인 거래은행의 실지명의를 재확인 후 신청바람

04.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20년 12월 25일

대한상사

귀하

금 액 : ₩ 330,000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법인자	등록번호	123-45-67890		
	상 호	한국터미널	성명	홍길동
	사 업 장 지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업 태	운수관련서비스	종목	항만해역 및 항만운송업

작업내역	검사비용 등	NO	12324		
	내역	SIZE	수량	단가	비고
	상하차료	20FT	1	30,000	
	구내운송료	20FT	1	50,000	
	적출입료	20FT	1	150,000	
<p>● 송금 계좌번호</p> <p>대한은행 : 123-45-6789012</p> <p>예금주 : 한국터미널</p>					
		공금가액	₩	230,000	
		부가가치세	₩	23,000	
		청구금액	₩	253,000	

승인번호 : 20200515-41000095-13296496

관리번호 : TX2020057023610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책번호	2020	권	05	호
				일련번호				
발 행 자	등록번호	123-45-67890			등록번호			
	상호	한국터미널	성명	홍길동	상호	(주)대한상사	성명	홍길순
	사업장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사업장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23		
	업태	서비스(운수관련)업	종사업장번호		업태	운수업 외	종사업장번호	
종목	기타	종목	국가물류 주선산업 외					
작성일자		2020	12	25	공금가액		세액	
					230,000		23,000	
비고								
일	일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금가액	세액	비고
12	25	상하차로	20FT	1		30,000	3,000	
		구내운송료	20FT	1		50,000	5,000	
		적출입료	20FT	1		150,000	15,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253,000		253,000	0	0	0			

인쇄횟수 : 1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 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형으로 안전발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교부업무 대행사업자 : (주)더존비즈온 [134-01-08473]

필수 기재 사항

1.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 등 거래 관련 업체의 정보 및 연락처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는 내용
2. 컨테이너번호·화물관리번호 등 화물정보와 검사일, 지급일 등 검사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검사에 따른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운송료, 상하·차로, 적출·입료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행주체에 따라,

- ① 운송업체, 부두운역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역사, 운송업체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역사나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필요

05. 위임장 등

위 임 장

○ 위임인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성명 : 홍길동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12345-1234567

Hong
(인)

○ 대리인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23
성명 : 대한관세법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123-45-67890



상기 위임인 **홍길동** 은 **대한관세법인** 를 대리인으로 하여 상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홍길동** 에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 년 12 월 25 일

위임인 **홍길동** *Hong*
(서명)

유의사항 | 화주가 위임한 관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포함된 위임장이 필요

✓ 검사비용 지급심사

심사 담당자가 지원대상 여부, 신청 금액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액을 확정

심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기업규모,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수출 신고번호) 일치 여부
- 검사결과 등 법령위반 사실여부
- 검사비용 신청금액의 적정여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보완을 요구가능

※ **보완요구**: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5일 이내)을 지정하여 통보
☞ 제출기한 내에 보완요구 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될 수 있음

* 보완요구 사유

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확정된 후 예산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지급예정**: 예산 확인결과, 기한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지급보류**: 예산 부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중단**: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신청한 화주의 사업자명의로 계좌로 검사비용지원금액을 지급

03

정정 및 취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정정 및 취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정정 및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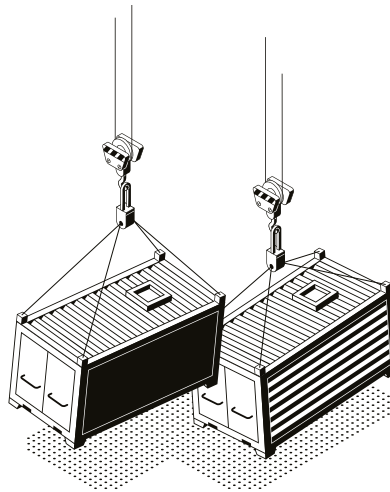
03

✓ 검사비용 지급 정정신청

- 시 기** 신청인이 지급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 검사비용지급신청 정정/취하 승인 (신청)서 작성
- ※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2호 서식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정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포함)

정정 및 취하

항 목	작성 내용
신청내역	신청인: 신청인 상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정정신청일자: 정정 신청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사유: 정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정 전: 정정 전 내용 기재합니다. 정정 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 2호 서식]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치수)	12345-20-6789012 (1)	신청일자	20.12.25 (yyy-mm-dd)
신청인	(상호) (주)대한상사 (성명) 홍길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정정신청일자	20.12.25 (yyy-mm-dd)		
신청사유	신청서 작성 오류로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정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2. 정정 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컨테이너 번호	PUTY 24877	PUTY 24878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내역 정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 년 12 월 25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인 천 세 관 장 귀하			

✓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

시 기 신청인이 지급 신청내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신청방법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 검사비용지급신청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작성
 ※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3호 서식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항 목	작성 내용
신청내역	신청인: 신청인 상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취하신청일자: 취하신청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사유: 취하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검사비용 지급 신청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지수)	12345-20-6789012 (1)	신청일자 20.12.25 (yyy-mm-dd)
신청인	(상호) (주)대한상사 (성명) 홍길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정정신청일자	20.12.25 (yyy-mm-dd)	
신청사유	지급신청 오류로 검사비용 지급 신청 취하 승인을 신청합니다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내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 년 12 월 25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인 천 세 관 장 귀하		

0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Q & A

Q & A

Q1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올해 7월 1일 검사를 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비용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3 검사비용 지급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에게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① 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③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 ① 운송업체 · 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 · 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 ·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이 있나요?

- 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번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반면, 이미 통관고유번호 및 신고인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검사를 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Q6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 검사화물은 무엇인가요?

-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을 의미하고,
- 수출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 물품입니다.

Q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지난해('19.12.31) 「관세법」제173조제3항 개정 및 올해('20.2.11) 관세법 시행령 제 187조의4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아울러,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Q8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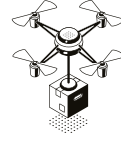
-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검사비용 지원 제외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검사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 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 관리번호 및 수입 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10 검사비용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지급예정은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며,
- 지급보류는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끝으로, 지급중단은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Q11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12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취회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13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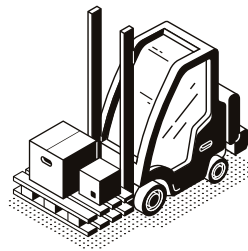
- 검사비용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내역 날짜, 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따라서,
 -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3개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Q14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먼저,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제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0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상담창구

내용문의

 유선상담

연번	소속	부서명	연락처
1	관세청	통관기획과(검사비용 지원제도)	042-481-785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검사비용 신청및 심사)	02-2107-2523
			02-2107-2529
			02-2107-2530
			02-2107-2531
			02-2107-2533
			02-2107-2534
			02-2107-2537
			02-2107-2538
			02-2107-2539
		(FAX)02-857-3282	
2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4
	서울세관		02-510-1382
	부산세관		051-620-6953
	대구세관		053-230-5183
	광주세관		062-975-8192
	평택세관		031-8054-7043
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4	시스템관련 문의		1544-1285

상담창구

☑ 인터넷 상담

01. 관세청 고객센터(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 이용안내 ▶ 인터넷상담신청 ▶ 본인 인증 후 상담내용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for internet consultations.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이용안내' (Usage Guide), '공지사항' (Notice), '정보마당' (Information), '자주하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센터소개' (Center Introduc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WORLD BEST CUSTOMS WE WISH THE KCS' and '고객 만족이 우리의 최고 목표입니다' (Customer satisfaction is our highest goal). It features a search bar and four service tiles: '나의 상담 이력(인타사)' (My consultation history), '전화상담 (ex 125)' (Phone consultation), '인터넷 상담' (Internet consultation), and '방문 상담' (In-person consultation). Below these are sections for '필요시 상담사례' (Cases when needed), '자주하는 질문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인터넷 상담사례' (Internet consultation cases). A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section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phone and internet consultations. The footer contains the KCS logo, address, and contact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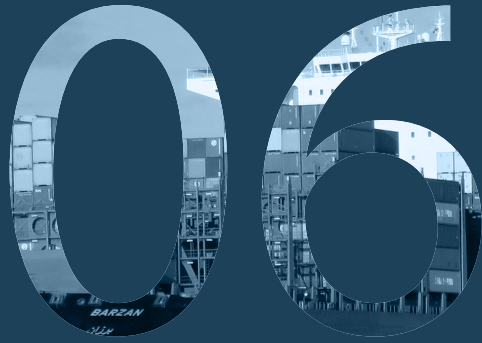
02. 시스템 관련 상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질의응답 ▶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 질의응답 페이지 스크린샷. 페이지 상단에는 '질의응답' 탭이 선택되어 있으며, 검색창과 필터 옵션이 제공됩니다. 본문에는 질문 목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는 질문 번호, 질문 내용, 답변 일자, 답변 내용, 답변자, 그리고 조회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번호	질문내용	답변일자	답변내용	답변자	조회수
206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비공개	3
205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비공개	3
204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비공개	4
203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공개	5
202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공개	3
201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공개	6
200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4	답변완료	비공개	1
199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3	답변완료	비공개	3
198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3	답변완료	비공개	4
197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2020-08-03	답변완료	비공개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검사비용 고시

Korea Customs Service

검사비용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통관기획과 TEL. 042-481-78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업체)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따른 검사결과가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2. 「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검사장소)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5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3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및 컨테이너 내장(內場)물품 적출·입료(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한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검사비용 기준(이하 '검사비용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세관관할 지역별 또는 전국세관 단위로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 2월에 공고한다.

-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2항에 따라 세관별로 조사된 컨테이너 검사비용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세관별로 조사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1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검사비용 지원 신청인)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검사비용 신청서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와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세관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3.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4.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 ①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인터넷 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인터넷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각하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비용지원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의 내역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11조(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 ① 세관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및 첨부서류 확인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2. 법령위반 사실 등 신청물품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
4.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및 금액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액 결정 후, 검사비용 잔액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금액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부서 직원과 동행 할 수 있다.

제12조(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①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를 심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 기한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내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류 및 중단) ① 세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기한 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 및 환수) ① 세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다운로드 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즉시 반납처리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검사비용 지급 건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 할 때 송금요류가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검사 비용 심사업무 수탁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다 지급금 환수 절차 등) ①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액 결정에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 되거나 지급 결정액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 또는 적정하게 신청된 검사비용이 부족하게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급한 세관에 통보하여 화주로부터 과다 지급금을 즉시 환수하게 하거나 추가지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금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당초 지급 결정액과 지급금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통보서를 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6항 및 영 제288조제10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제9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검사비용 심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검사비용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 ②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 심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업무 심사·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 ③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상신된 검사비용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확정 후 지급액이 과다 또는 과소지급 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 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송금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 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잔액 관리) ①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용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여부 등의 잔액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보안유지 등) ① 수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위탁사무 수행 시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법 제330조제7호에 따라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 기간 및 자료보완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검사비용 지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의 공고는 2020년도의 경우 6월에 공고한다.

※ 동 고시는 참고용으로, 확정된 고시내용을 아래 방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세청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최신법령 + 클릭 > 검색
-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 행정규칙 > 검색

[별 표]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구 분	검사결과		
	구 분	번호	위반사항
제3조 제1항 제1호 물품 (관리대상 화물)	1. 검색기검사	1-①	타기관 이첩(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 즉시검사 (검색기검사 후 개장 검사 포함)	2-①	안보위해물품,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고발의뢰)
		2-②	품명위장·타물품혼입밀수(고발의뢰)
		2-③	위험물품·검역물품 등 적발(고발의뢰)
		2-④	수량·중량 과부족(고발의뢰)
		2-⑤	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물품(고발의뢰)
		2-⑥	원산지 표시 위반(고발의뢰)
제3조 제1항 제2호 물품 (부두직통관 화물)	1. 품목분류 위반	1-①	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1-②	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 번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2. 수량·중량 상이	2-①	수량·중량 과·부족(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2-②	무단반출(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3. 세율(액) 적용 위반	3-①	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3-②	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4. 관세감면·분납 적용 위반	4-①	감면불허(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5. 가격신고 위반	5-①	가격·운임·보험 등 누락과표 과세(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6. 품명위장	6-①	수입금지품 위장수입
		6-②	미신고물품 위장수입
	7. 세관장확인 사항 위반	7-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동일세번)
		7-②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세번변경)
		7-③	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고발의뢰, 통고처분)
		7-④	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고발의뢰, 통고처분)
	8. 국민건강·사회안전 적발	8-①	마약류 적발(고발의뢰)
		8-②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고발의뢰, 통고처분)
		8-③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④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고발의뢰, 통고처분)
		8-⑤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⑥	기타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침해물품 수입(통관보류)
	9. 원산지표시 위반	9-①	원산지 미표시
		9-②	원산지 허위표시
		9-③	원산지 오인표시
		9-④	원산지 표시 부적정
		9-⑤	원산지 표시 손상
		9-⑥	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10.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10-①	허위표시 (통관보류)	
	10-②	오인표시 (통관보류)	

구 분	검사결과			
	구 분	번호	위반사항	
제3조 제1항 제2호 물품 (부두직통관 화물)	11. 상표권 위반	11-①	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자체조사, 고발의뢰 또는 통관불허)	
		11-②	상표권 침해(진정상품)(통관불허)	
	12. 기타 지식재산권 위반	12-①	상표권 이외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13. 협업·분석 검사	13-①	불법제품(미인증, 허위표시, 미표시, 기타위반표시)
			13-②	불량제품(부적합제품)
			13-③	유해성분기준치 초과
	13-④	인증결과 고발의뢰(통고처분 포함)		
	14. 방사능 검사 (표면 방사선량을 측정)	14-①	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5. 수리 후 분석 및 품목분류 질의	15-①	수리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16. 정밀검사	16-①	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6-②		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제3조 제1항 제3호 물품 (수출 적재지 검사 화물)	1. 품목분류 상이	1-①	세 번상이(환급대상)	
	2. 수량 중량 상이	2-①	수량·중량 과(부)족(고발의뢰)	
	3. 원산지규정 위반	3-①	원산지 허위 표시	
		3-②	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	
	4. 지식재산권 위반	4-①	위조 상표 수출(고발의뢰)	
		4-②	상표권 침해	
		4-③	저작권·의장권 등 위반(고발의뢰)	
	5. 위장 수출	5-①	수출금지품 위장 수출	
		5-②	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	
	6. 현품검사 곤란	6-①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	
		6-②	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	
	7.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위반	7-①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	
	8. 중고차량 불법 수출 위반	8-①	차대번호 상이 신고	
		8-②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	
		8-③	도난 범죄 차량 적발	
	9. 수리 후 분석	9-①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	
	10. 신고 오류	10-①	신고물품 일부(전체) 누락 신고 오류	
	11. 거래구분 정정	11-①	원상태 수출 부적정	
		11-②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12. 스마트폰 불법 수출 위반	12-①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개 미만)	
12-②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9개)		
12-③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10개 이상)		

※ [별표]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1-①', 제3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8-③', '8-⑤', '15-①' 및 제3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9-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별표]의 검사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당초 검사결과 포함)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년 월 일
③ 검사 세관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평택, <input type="checkbox"/> 군산, <input type="checkbox"/> 광양, <input type="checkbox"/> 포항,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관리대상화물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부두직통관화물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적재지검사화물	(수출신고번호:)	
⑤ 신청관세사 :		⑥ 관세사부호 :	
		⑦ 연락처 :	
* '⑤, ⑥ 관세사' 란은 화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2. 수출입 화주			
① 상 호	(신고인부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통관고유부호	
⑤ 주 소		⑥ 연 락 처	
3. 지급계좌			
① 예 금 주		② 은 행 명	
③ 지급계좌번호		④ 실지명의번호	
* '④ 실지명의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검사비용			
① 운 송 비		② 상 · 하차료	
③ 적출·입료		④ 합 계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		② 컨테이너(개수)	20FT(), 40FT(), 기타()
「관세법」 제1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3.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4.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내역 날짜 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함
 - ① 운송업체 · 부두운영사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 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② 포워더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하여 부두운영사 ·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제출

항목	작성내용	작성례
1. 신청내역	① 신청번호는 세관기재란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일자(신청시 '년 월 일'을 기재합니다.	• 2020년 8월 25일
	③ 검사를 실시한 세관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부산'선택
	④ 검사를 실시한 화물의 종류에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 관리대상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부두직통관화물은 화물관리번호(19자리이내, 수입신고번호(14자리) 모두기재 - 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번호(14자리)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관리대상화물'선택 • 관리대상 및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 화물관리번호: 20HXFC5470i82500726 - 수입신고번호: 1225120201772M • 적재지검사화물의 경우 - 수출신고번호: 4284520050033X
	⑤ 신청한 관세사명을 기재합니다.	• (주)우리들 관세 (※ 화주신청시 생략)
	⑥ 관세사 부호 5자리를 기재합니다.	• 12345 (※ 화주신청시 생략)
	⑦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2. 수출입 화주	① 화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신고인 부호(5자리)를 기재합니다.	• ○○물산(주)(45678) (※관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신고인 부호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1234567890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홍○○
	④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합니다.	• 갑을병정4567890
	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전광역시 ○○구 ○○동 125번지
	⑥ 신청인의 사무실 및 휴대폰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0021547484 및 1234567891
3. 지급계좌	① 사업자 명의 통장계좌의 예금주를 기재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 법인사업자 : ○○물산(주) • 개인사업자 - 홍○○(ABC네트워크) 또는 홍○○
	② 통장개설 은행을 확인 한 후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1.산업은행, 2.기업은행, 3.국민은행, 4.외환은행, 5.수협, 6.농협, 7.지역농축협, 8.우리은행, 9.SC제일은행, 10.한국씨티은행, 11.대구은행, 12.부산은행, 13.광주은행, 14.제주은행, 15.전북은행, 16.경남은행, 17.새마을금고, 18.신협, 19.상호저축은행, 20.우체국, 21.KEB하나은행, 22.신한은행, 23.산림조합중앙회 계좌에 한함	• ○○은행

항목	작성내용	작성례
3. 지급 계좌	③ 통장계좌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54178413333
	④ 사업자 통장개설 할 때의 실지명의* 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7234567890123
4. 검사 비용	①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운송비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40,000
	②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상·하차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0,000
	③ 검사 중 발생하여 화주가 부담한 적출·입료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기재단위(원): 250,000
	④ 합계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검사비용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합계를 직접입력	•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는 경우 - 자동계산: 310,000원 •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직접입력: 110,000원
5. 컨테이너	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번호 입력: PUTY24877
	② 컨테이너 종류를 선택하고 개수를 기재합니다.	• 컨테이너 종류와 개수 입력: 40FT(2)
처리기간	1.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지급 2.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검사비용 지급 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치수)	××××××-××××××(1)	신청일자	(yyy-mm-dd)
신청번호	(상호) (성명)	<input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정정신청일자	(yyy-mm-dd)		
신청사유			
2. 정정 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p>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내역 정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 세 관 장 귀하</p>			

[별지 제 3호 서식]

검사비용 지급 신청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내역			
신청번호 (치수)	××××××-×××××××(1)	신청일자	(yyy-mm-dd)
신청번호	(상호) (성명)	<input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취하신청일자	(yyy-mm-dd)		
신청사유			
<p>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내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 세 관 장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 XXX(세관)-보완-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신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

위 신청건에 대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 내역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보완요구 사항

가. 보완요구 사유 : XXXXXXXXXXXXXXXXXXXX

나. 보완요구 사항 : XXXXXXXXXXXXXXXXXXXX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5호 서식]

각 하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각하-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각하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각하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6호 서식]

보류 통보서

문서번호 : XXX(세관)-보류-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신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

보류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지급 보류를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별지 제 7호 서식]

중 단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중단-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

중단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지급 중단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 XXXXX

연락처 :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1. 통보내역			
신청번호	××××××-×××××××(1)	신청일자	(yyy-mm-dd)
신청인	(상호) 관세사	(성명)	<input type="checkbox"/> 화주 <input type="checkbox"/>
통보일자	(yyy-mm-dd)		
통보사유			
2.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비용 지급 신청내역 정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세관부호-년도-XXXXX(일련번호)

통보일자 : YYYY-MM-DD

붙임: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 1부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오니,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장

○ ○ 세 관 장 귀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발행일 : 2020년 6월

발행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감 수 : 통관기획과장

기획·편집 : 임동욱, 홍인영, 문현준, 전우진, 이현성
이성경, 김종완, 채정아, 이한나, 손덕춘

인 쇄 : 아이아트기획
042.226.9897